성주군 참외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성주군 참외산업의 발전을 위해 참외덩굴 소각근절, 성주참외 공동브랜드 사용, 참외 자조금납부 등 참외재배 농업인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신설하고

○ 이에 대한 불이행 작목반 또는 농업인에 대한 참외관련 보조 사업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농업인 준수사항 신설 (안 제6조제1항)
- 배수로 등 공공수역내 발효과 투기근절
- 참외덩굴 소각근절
- 성주참외 공동브랜드 사용, 참외 자조금 납부
-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.

○ 농업인 제재규정 강화 (안 제6조제2항 및 제4항, 제5항)
- 1회 위반 시 : “경고”를 “1년간 보조사업 제한”으로 변경
- 2회 위반 시 : “익년도 지원중단”을 “2년간 제한”으로 변경
- 3회 위반 시 : “익년도부터 2년간 지원중단”을 “3년간 제한”으로 변경
- 생산자단체는 그 구성원, 농업인은 그 세대원에게 연대제재
- 제재대상 보조사업의 종류와 제한 범위는 참외산업발전위원회에서 정한다.

4. 관련법령

○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, 제48조 및 제50조

5. 검토의견

□ 제출자, 개정이유, 주요내용,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.

□ 본 개정조례안은

○ 우리군의 참외산업 발전을 위해 2008년 9월 30일부터 현재까지 본 조례를 시행해 오면서 집행상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리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

○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성주참외에 대한 이미지 조성을 위하여 농민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환경 분야, 친환경녹색 분야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, 참외농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제재대상 보조사업의 종류와 범위를 참외농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참외산업발전위원회에 위임함으로써 민주적인 정책적 타당성을 가졌다고 보이며,

○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법률우위의 원칙에 의거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합목적성을 갖추었다고 보임으로 「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」의 규정에 적합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